화성 송산그린시티 대방 노블랜드 3차 (EAB9블럭)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 이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6.12.15 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청약자격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어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당 아파트는 주택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2016.11.15)이 적용되오니,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순위체계 간소화 및 청약통장 순위발생 요건 완화 : 기존 '1,2,3순위' 방식을 → '1,2순위' 방식으로 간소화 / 수도권 1순위 발생 요건이 기존 '2년, 24회 납입'→'1년, 12회 납입'으로 변경.
- – 민영주택 특별공급 신청시 무주택세대주 요건완화 : 기존 '무주택세대주'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경우에도 신청가능(1세대 1명만 청약신청가능) 단,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과 같이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계속 적용됨.
- –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 예치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모든 규모에 청약 가능 / 주택규모변경 기간(2년) 및 주택규모 상향 시 청약제한 기간(3개월) 폐지.
- – 민영주택 가점제 청약 시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 주택소유 수에 따른 감점 폐지.
- –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 기존 '60㎡ 이하 +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에서 → '60㎡ 이하 + 공시가격 수도권 1억 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로 변경.
-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대한 월납입금 연체 등에 관한 규정 폐지 : 연체, 선납 등을 감안하여 청약순위 인정 → 지역, 면적별 예치금액을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예치하여 입금일 즉시 청약순위 인정
- – 부적격 당첨자 제한기간 강화 : 당첨일로부터 3개월 → 당첨일로부터 1년 연장
- ■ 당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민영주택으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 2순위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으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2순위 청약신청금을 미리 예치해야 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의거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단,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의 우선공급 의거 당 사업지는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신청 가능하나, 2015.12.15. 이전부터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화성시)에서 1년이상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화성시)은「주택법」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입니다.
- ■ 이 공고문에서 "무주택 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 함. 단,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 3명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나 청약 신청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에 만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미성년인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특별·일반공급)시 최하층을 희망하는 때에는 우선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고령자세대 및 장애인세대의 신청자가 3명 이상 미성년자녀의 세대보다 우선하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음.(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주택법」 제56조 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봄.
- ■ 전매금지
- –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주택법」제64조 제1항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 제1항[별표3] 규정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2017.01.03.) 부터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 ■ 재당첨 제한기간
- –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1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본 아파트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85㎡ 이하인 경우 당첨일로부터 3년간, 85㎡ 초과인 경우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며,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만 해당한다)에 대한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단,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기존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 통장은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함)
-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의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85㎡ 초과 주택은 100%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제101조)
-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상기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2016.11.15.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화성시 주택과 – 22977호 (2016. 12. 15.)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 공급위치 : 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EAB9블럭
-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21~25층 9개동 총 87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77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85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77세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23세대 포함]
-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구분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	공 급 세 대 수						해당동	최하층 배정 세대수	입주 예정 시기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 공용 면적	합 계		계	특별공급				일반공급			
			주거 전용	주거 공용	소계					기관 추천 (일반)	다자녀	신혼 부부	노부모				
민영주택 EAB9	2016001582-01	73.9706A	73.9706	23.0638	97.0344	44.6823	141.7167	62.234	94	9	9	9	2	65	303, 304동	4	2019년 8월
	2016001582-02	73.9069B	73.9069	22.9666	96.8735	44.3955	141.269	62.1804	94	9	9	9	2	65	303, 304동	4	
	2016001582-03	84.9191A	84.9191	27.908	112.8271	51.6469	164.474	71.4454	175	17	17	17	5	119	301,302,305, 306,308,309동	7	
	2016001582-04	84.9692B	84.9692	27.5789	112.5481	51.6516	164.1997	71.4875	300	30	30	30	9	201	301,302,305, 306,308,309동	12	
	2016001582-05	84.9644C	84.9644	27.4628	112.4272	51.6677	164.0949	71.4835	125	12	12	12	3	86	301,302,305, 306, 309동	5	
	2016001582-06	115.1388A	115.1388	25.5335	140.6723	70.0308	210.7031	96.8703	42	–	4	–	1	37	307동	2	
	2016001582-07	115.1983B	115.1983	25.2382	140.4365	70.025	210.4615	96.9203	42	–	4	–	1	37	307동	2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주택형 (㎡) (전용면적)	동별 (라인별)	세대수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2차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30%
								계약시	2017.01.31	2017.04.10	2017.09.10	2018.03.10	2018.09.10	2018.12.10	2019.04.10	입주지정일
73.9706 [73A]	303동 (1,4호라인) 304동 (1,4호라인)	94	1층	4	99,932,400	192,267,600	292,200,000	14,610,000	14,610,000	29,220,000	29,220,000	29,220,000	29,220,000	29,220,000	29,220,000	87,660,000
			2층	4	93,981,600	180,818,400	274,800,000	13,740,000	13,740,000	27,480,000	27,480,000	27,480,000	27,480,000	27,480,000	27,480,000	82,440,000
			3층	4	97,264,800	187,135,200	284,400,000	14,220,000	14,220,000	28,440,000	28,440,000	28,440,000	28,440,000	28,440,000	28,440,000	85,320,000
			4층	4	97,264,800	187,135,200	284,400,000	14,220,000	14,220,000	28,440,000	28,440,000	28,440,000	28,440,000	28,440,000	28,440,000	85,320,000
			5층	4	99,932,400	192,267,600	292,200,000	14,610,000	14,610,000	29,220,000	29,220,000	29,220,000	29,220,000	29,220,000	29,220,000	87,660,000
			6층~7층	8	101,916,000	196,084,000	298,000,000	14,900,000	14,900,000	29,800,000	29,800,000	29,800,000	29,800,000	29,800,000	29,800,000	89,400,000
			8층~차상층	62	103,557,600	199,242,400	302,800,000	15,140,000	15,140,000	30,280,000	30,280,000	30,280,000	30,280,000	30,280,000	30,280,000	90,840,000
			최상층	4	136,629,000	262,871,000	399,500,000	19,975,000	19,975,000	39,950,000	39,950,000	39,950,000	39,950,000	39,950,000	39,950,000	119,850,000
73.9069 [73B]	303동 (2,3호라인) 304동 (2,3호라인)	94	1층	4	97,162,200	186,937,800	284,100,000	14,205,000	14,205,000	28,410,000	28,410,000	28,410,000	28,410,000	28,410,000	28,410,000	85,230,000
			2층	4	91,177,200	175,422,800	266,600,000	13,330,000	13,330,000	26,660,000	26,660,000	26,660,000	26,660,000	26,660,000	26,660,000	79,980,000
			3층	4	94,494,600	181,805,400	276,300,000	13,815,000	13,815,000	27,630,000	27,630,000	27,630,000	27,630,000	27,630,000	27,630,000	82,890,000
			4층	4	94,494,600	181,805,400	276,300,000	13,815,000	13,815,000	27,630,000	27,630,000	27,630,000	27,630,000	27,630,000	27,630,000	82,890,000
			5층	4	97,162,200	186,937,800	284,100,000	14,205,000	14,205,000	28,410,000	28,410,000	28,410,000	28,410,000	28,410,000	28,410,000	85,230,000
			6층~7층	8	99,145,800	190,754,200	289,900,000	14,495,000	14,495,000	28,990,000	28,990,000	28,990,000	28,990,000	28,990,000	28,990,000	86,970,000
			8층~차상층	62	100,787,400	193,912,600	294,700,000	14,735,000	14,735,000	29,470,000	29,470,000	29,470,000	29,470,000	29,470,000	29,470,000	88,410,000
			최상층	4	133,858,800	257,541,200	391,400,000	19,570,000	19,570,000	39,140,000	39,140,000	39,140,000	39,140,000	39,140,000	39,140,000	117,420,000
84.9191 [84A]	301동 (4호라인) 302동 (4호라인) 305동 (1호라인) 306동 (1호라인) 308동 (1,4호라인) 309동 (4호라인)	175	1층	7	114,843,600	220,956,400	335,800,000	16,790,000	16,790,000	33,580,000	33,580,000	33,580,000	33,580,000	33,580,000	33,580,000	100,740,000
			2층	7	108,208,800	208,191,200	316,400,000	15,820,000	15,820,000	31,640,000	31,640,000	31,640,000	31,640,000	31,640,000	31,640,000	94,920,000
			3층	7	111,868,200	215,231,800	327,100,000	16,355,000	16,355,000	32,710,000	32,710,000	32,710,000	32,710,000	32,710,000	32,710,000	98,130,000
			4층	7	111,868,200	215,231,800	327,100,000	16,355,000	16,355,000	32,710,000	32,710,000	32,710,000	32,710,000	32,710,000	32,710,000	98,130,000
			5층	7	114,843,600	220,956,400	335,800,000	16,790,000	16,790,000	33,580,000	33,580,000	33,580,000	33,580,000	33,580,000	33,580,000	100,740,000
			6층~7층	14	117,169,200	225,430,800	342,600,000	17,130,000	17,130,000	34,260,000	34,260,000	34,260,000	34,260,000	34,260,000	34,260,000	102,780,000
			8층~차상층	119	119,152,800	229,247,200	348,400,000	17,420,000	17,420,000	34,840,000	34,840,000	34,840,000	34,840,000	34,840,000	34,840,000	104,520,000
			최상층	7	155,507,400	299,192,600	454,700,000	22,735,000	22,735,000	45,470,000	45,470,000	45,470,000	45,470,000	45,470,000	45,470,000	136,410,000
84.9692 [84B]	301동 (2,3호라인) 302동 (2,3호라인) 305동 (2,3호라인) 306동 (2,3호라인) 308동 (2,3호라인) 309동 (2,3호라인)	300	1층	12	110,192,400	212,007,600	322,200,000	16,110,000	16,110,000	32,220,000	32,220,000	32,220,000	32,220,000	32,220,000	32,220,000	96,660,000
			2층	12	103,557,600	199,242,400	302,800,000	15,140,000	15,140,000	30,280,000	30,280,000	30,280,000	30,280,000	30,280,000	30,280,000	90,840,000
			3층	12	107,217,000	206,283,000	313,500,000	15,675,000	15,675,000	31,350,000	31,350,000	31,350,000	31,350,000	31,350,000	31,350,000	94,050,000
			4층	12	107,217,000	206,283,000	313,500,000	15,675,000	15,675,000	31,350,000	31,350,000	31,350,000	31,350,000	31,350,000	31,350,000	94,050,000
			5층	12	110,192,400	212,007,600	322,200,000	16,110,000	16,110,000	32,220,000	32,220,000	32,220,000	32,220,000	32,220,000	32,220,000	96,660,000
			6층~7층	24	112,483,800	216,416,200	328,900,000	16,445,000	16,445,000	32,890,000	32,890,000	32,890,000	32,890,000	32,890,000	32,890,000	98,670,000
			8층~차상층	204	114,467,400	220,232,600	334,700,000	16,735,000	16,735,000	33,470,000	33,470,000	33,470,000	33,470,000	33,470,000	33,470,000	100,410,000
			최상층	12	150,856,200	290,243,800	441,100,000	22,055,000	22,055,000	44,110,000	44,110,000	44,110,000	44,110,000	44,110,000	44,110,000	132,330,000
84.9644 [84C]	301동 (1호라인) 302동 (1호라인) 305동 (4호라인) 306동 (4호라인) 309동 (1호라인)	125	1층	5	111,457,800	214,442,200	325,900,000	16,295,000	16,295,000	32,590,000	32,590,000	32,590,000	32,590,000	32,590,000	32,590,000	97,770,000
			2층	5	104,823,000	201,677,000	306,500,000	15,325,000	15,325,000	30,650,000	30,650,000	30,650,000	30,650,000	30,650,000	30,650,000	91,950,000
			3층	5	108,482,400	208,717,600	317,200,000	15,860,000	15,860,000	31,720,000	31,720,000	31,720,000	31,720,000	31,720,000	31,720,000	95,160,000
			4층	5	108,482,400	208,717,600	317,200,000	15,860,000	15,860,000	31,720,000	31,720,000	31,720,000	31,720,000	31,720,000	31,720,000	95,160,000
			5층	5	111,423,600	214,376,400	325,800,000	16,290,000	16,290,000	32,580,000	32,580,000	32,580,000	32,580,000	32,580,000	32,580,000	97,740,000
			6층~7층	10	113,749,200	218,850,800	332,600,000	16,630,000	16,630,000	33,260,000	33,260,000	33,260,000	33,260,000	33,260,000	33,260,000	99,780,000
			8층~차상층	85	115,732,800	222,667,200	338,400,000	16,920,000	16,920,000	33,840,000	33,840,000	33,840,000	33,840,000	33,840,000	33,840,000	101,520,000
			최상층	5	152,121,600	292,678,400	444,800,000	22,240,000	22,240,000	44,480,000	44,480,000	44,480,000	44,480,000	44,480,000	44,480,000	133,440,000
115.1388 [115A]	307동 (1,4호라인)	42	1층	2	139,620,300	277,779,700	417,400,000	20,870,000	20,870,000	41,740,000	41,740,000	41,740,000	41,740,000	41,740,000	41,740,000	125,220,000
			2층	2	132,595,800	263,804,200	396,400,000	19,820,000	19,820,000	39,640,000	39,640,000	39,640,000	39,640,000	39,640,000	39,640,000	118,920,000
			3층	2	136,409,100	271,390,900	407,800,000	20,390,000	20,390,000	40,780,000	40,780,000	40,780,000	40,780,000	40,780,000	40,780,000	122,340,000
			4층	2	136,409,100	271,390,900	407,800,000	20,390,000	20,390,000	40,780,000	40,780,000	40,780,000	40,780,000	40,780,000	40,780,000	122,340,000
			5층	2	139,620,300	277,779,700	417,400,000	20,870,000	20,870,000	41,740,000	41,740,000	41,740,000	41,740,000	41,740,000	41,740,000	125,220,000
			6층~7층	4	142,229,400	282,970,600	425,200,000	21,260,000	21,260,000	42,520,000	42,520,000	42,520,000	42,520,000	42,520,000	42,520,000	127,560,000
			8층~차상층	26	144,504,000	287,496,000	432,000,000	21,600,000	21,6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129,600,000
			최상층	2	189,795,300	377,604,700	567,400,000	28,370,000	28,370,000	56,740,000	56,740,000	56,740,000	56,740,000	56,740,000	56,740,000	170,220,000
115.1983 [115B]	307동 (2,3호라인)	42	1층	2	131,458,500	261,541,500	393,000,000	19,650,000	19,65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117,900,000
			2층	2	124,400,550	247,499,450	371,900,000	18,595,000	18,595,000	37,190,000	37,190,000	37,190,000	37,190,000	37,190,000	37,190,000	111,570,000
			3층	2	128,247,300	255,152,700	383,400,000	19,170,000	19,170,000	38,340,000	38,340,000	38,340,000	38,340,000	38,340,000	38,340,000	115,020,000
			4층	2	128,247,300	255,152,700	383,400,000	19,170,000	19,170,000	38,340,000	38,340,000	38,340,000	38,340,000	38,340,000	38,340,000	115,020,000
			5층	2	131,458,500	261,541,500	393,000,000	19,650,000	19,65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117,900,000
			6층~7층	4	134,034,150	266,665,850	400,700,000	20,035,000	20,035,000	40,070,000	40,070,000	40,070,000	40,070,000	40,070,000	40,070,000	120,210,000
			8층~차상층	26	136,342,200	271,257,800	407,600,000	20,380,000	20,380,000	40,760,000	40,760,000	40,760,000	40,760,000	40,760,000	40,760,000	122,280,000
			최상층	2	181,633,500	361,366,500	543,000,000	27,150,000	27,15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162,900,000

※ 공통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2009.04.01)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향별로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통합 취득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옵션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옵션품목은 분양계약자 선택사항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냉장고 등]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임. • 분양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납부시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 위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체결 후 지정된 대출 협약은행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현금납부하여야 함.(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사업주체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음으로써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도 사업주체(시행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이며,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임. • 분양대금 중 선납한 금액은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고, 별도의 이자나 할인이 발생하지 않음.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사본불가)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2.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 특별공급 공통사항 [기관추천(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주택 소유자 등)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40조, 제41조, 제46조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함)인 자로서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1세대에서 1명만 청약신청 가능)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음.(단, 철거주택 소유자인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통장가입 요건 등 일부항목 적용 배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고,
②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일 때,
①+②에 포함된 사람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참조)
⇒①에 해당하는 분들 중 ②를 충족하시는 분만이 특별공급등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①과 ②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서로 동일함)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것으로 봄

주택공급신청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세대주가 청약시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주택공급신청자는 동일함.)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
무주택여부확인대상자	–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본에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 공통사항
-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부적격당첨자로 처리)
-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 (부적격당첨자로 처리)
-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함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2.15) 현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35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2호, 제13호, 제17호 및 제28호), 제3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제35조 제1항 제1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를 제외한다.

특별공급 대상	청약통장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자	청약통장 필요없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대상자	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청약 가능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단, 청약저축 및 청약부금 가입자 중 상기 청약예금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변경한 자 포함)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된 자 중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기관추천 특별공급(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는 제외) / 다자녀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	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 가능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단, 청약저축 및 청약부금 가입자 중 상기 청약예금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변경한 자 포함)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단, 신청 전에 가입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예치금액이 포함되는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면적 중 하나를 신청일까지 선택하여야 함. (면적지정을 하지 않은 자에 한함)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9조 제3항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관련)

구분	화성시(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화성시(경기도)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2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당첨자 선정(공고) 유의사항
- –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음.
-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호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 (동·호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5항의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 중 동·호수 배정업무를 추첨기관(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일시와 동·호수 배정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함.
- – 특별공급의 추첨순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40조에 해당하는 다자녀 특별공급, 제41조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46조에 해당하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순으로 추첨함.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음

- 특별공급 유의사항
- – 1세대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 저축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
  -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됨.
- – 특별공급 대상자는 각 특별공급에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함.
-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특별공급 주택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이상 신청시는 신청 모두를 무효처리함.
-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 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 부적격된 특별공급 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또는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일로부터 해제 시까지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차례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음.
- – 동호추첨 : 이전기관 특별공급 및 기타 특별공급은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 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에 따라 당첨자 중 1층의 주택을 희망하는 자(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다자녀가구)에게 1층의 주택 중 무작위로 동·호수를 우선 배정 후 나머지 세대에 대하여 재선정(1층이라 함은 공급주택 중 최저층을 말함)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 분		세대수							계
		73.9706A	73.9069B	84.9191A	84.9692B	84.9644C	115.1388A	115.1983B	
기관추천 특별공급	이주대책 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9	9	17	30	12	–	–	77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경기도 거주자(50%)	5	5	9	15	6	2	2	44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50%)	4	4	8	15	6	2	2	41
	소계	9	9	17	30	12	4	4	85
신혼부부 특별공급	화성시 거주자(30%)	3	3	5	9	4	–	–	24
	신혼부부 특별공급	2	2	4	6	2	–	–	16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50%)	4	4	8	15	6	–	–	37
	소계	9	9	17	30	12	–	–	77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화성시 거주자(30%)	1	1	1	2	1	1	1	8
	경기도 거주자(20%)	–	–	1	2	1	–	–	4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50%)	1	1	3	5	1	–	–	11
	소계	2	2	5	9	3	1	1	23
합계		29	29	56	99	39	5	5	262

※ 신청접수방법: 해당 청약신청일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청약신청 하여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 85㎡이하 공급세대수의 10%이내)
- **신청자격**
-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2.1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단, 철거민 대상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여부와 상관없음)

추천대상자	청약통장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통장 필요없음
북한이탈주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장기복무 군인, 우수기능인, 공무원, 중소기업 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박사학위 취득 영구 귀국자, 우수선수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 – 당해 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에서 철거되는 주택을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는 날 이전부터 소유 및 거주한 자(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 한하며, 1세대 1주택에 한한다)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납북 피해자
- – 「장애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한다)
- – 「공무원연금법」및「군인연금법」 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10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전가족이 국외에서 2년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자 또는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라 근무 이전으로 전가족이 주택건설지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자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내인 자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시책상 국내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구 귀국하게 하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로서 입국일부터 2년이내인 자
- – 올림픽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국제대학 스포츠 연맹·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의 경우에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를 말한다)에서 3위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및 우수기능인
- –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동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 나. 외국인 투자의 촉진
  - 다.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
- – 해외에서 1년이상 취업한 근로자 중 귀국일부터 2년이내인 자로서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

- 대상세대

구 분	기관추천							계
	73.9706A	73.9069B	84.9191A	84.9692B	84.9644C	115.1388A	115.1983B	
세대수	9	9	17	30	12	–	–	77
합계	9	9	17	30	12	–	–	77

- 당첨자 선정방법
-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2.1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단, 철거민 대상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여부와 상관없음)
-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선정 (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추첨에 의함.
-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 (미신청·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세대수의 10%이내)
- **신청자격**
-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2.15) 현재 수도권 지역(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으로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자
-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 자녀수에는 임신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대상세대

구분	다자녀 특별공급							계
	73.9706A	73.9069B	84.9191A	84.9692B	84.9644C	115.1388A	115.1983B	
경기도 거주자(50%)	5	5	9	15	6	2	2	44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50%)	5	4	8	15	6	2	2	41
합계	9	9	17	30	12	4	4	85

- 당첨자 선정방법
- –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 하되,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미달시 타 시·도에 배정함)
- * 동점자 처리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공급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신청 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기재)**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 수	
계	65			
미성년 자녀수 (1)	5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5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 (2)	10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 (3)	5	3세대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 이하 이 표에서와 같다)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한부모가족	5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 (4)	20	공급신청자 나이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공급신청자 나이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20	10년 이상	20	공급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10년 미만	15	
		1년 이상~5년 미만	10	
		1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2):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 표상에 등재 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4):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5):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당첨받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시 다자녀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 분은 무효처리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 (미신청·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이내)
- **신청자격**
-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2.15) 현재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신고일기준, 재혼 포함)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확인,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조' 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함.
  -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자는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이하여야 함.

※ 20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통계청 자료)

구분	20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3인	4인	5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4,816,665원 이하	5,393,154원 이하	5,475,403원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5,779,998원 이하	6,471,784원 이하	6,570,483원 이하

* 6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5인 이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475,403원) + {1인당 평균소득(329,369원) * (N–5)} * N → 6인 이상 가구원수 * N → 6인 이상 가구원수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으로 하되,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자인 직계존·비속 세대원으로 간주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신혼부부 주택의 거주지역요건 기준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제25조 및 제34조에 따른 거주지역요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대상세대

구분	신혼부부 특별공급							계
	73.9706A	73.9069B	84.9191A	84.9692B	84.9644C	115.1388A	115.1983B	
화성시 거주자(30%)	3	3	5	9	4	–	–	24
경기도 거주자(20%)	2	2	4	6	2	–	–	16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50%)	4	4	8	15	6	–	–	37
합계	9	9	17	30	12	–	–	77

- 당첨자 선정방법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2.15) 현재 기준으로 혼인기간 및 자녀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함.
- – 제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 이하 동일)하여 자녀가 있는 자.
- – 제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 ① 해당주택 건설지역의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 재혼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자로 인정되나,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함.
-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음.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 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 (미신청·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신혼부부 소득증빙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 된 월별급여명세표 (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 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접수장소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세대수의 3%이내)
- **신청자격**
-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2.15.)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
- –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 무주택기간 산정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대상세대**

구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계
	73.9706A	73.9069B	84.9191A	84.9692B	84.9644C	115.1388A	115.1983B	
화성시 거주자(30%)	1	1	1	2	1	1	1	8
경기도 거주자(20%)	–	–	1	2	1	–	–	4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50%)	1	1	3	5	1	–	–	11
합계	2	2	5	9	3	1	1	23

- **당첨자 선정방법**
-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르고,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미신청·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용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는 없으므로 일반 청약가점기준표를 작성토록 함.(견본주택 비치)
-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일반공급**

■ 인터넷 청약서비스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에서는 공급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www.kbstar.com),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이용대상	공통	– 1순위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 2순위 :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중 뱅킹계좌에 2순위 청약신청금 이상 잔액을 유지하고 계신 분 (16개 주택청약 참가은행만 해당됨)	
	인터넷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이용방법 및 절차	인터넷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특화서비스 「주택청약」⇒「인터넷청약」⇒「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APT청약신청」⇒「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KEB하나,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신한은행

■ **일반공급**
- **신청자격**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2.15.) 현재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만19세 이상인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 본 주택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건설되는 주택으로 화성시에 1년이상 계속 거주한자(2015.12.15.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30%를 우선 공급하며, 20%를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2016.06.15.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50%를 수도권(경기도 6개월미만 거주자,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공급한.
- – 경기도 거주 기간 산정 시 경기도 관내 행정구역간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예: 화성시 → 안산시)에는 합산이 가능하나, 경기도 외 타지역으로 전출하였다가 다시 경기도 관내 행정구역으로 전입한 경우 (예: 화성시 → 인천광역시 → 안산시)에는 새로 전입한 일자부터 산정하여야 함.
-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함.
- – 상기 주택에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계좌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 –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관계법령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등이 될 수 있음.
- – 부적격 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등) 중 소명기간 내에 착오 등으로 인하여 청약자격 사항을 잘못 기재하였음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 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 신청시 1순위 청약제약을 받을 수 있음.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2.09.25)으로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이 폐지되었으므로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함.(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 통장은 계약여부에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관련 [별표2])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02.27.)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거주구분
민영 주택	1순위	공통	• 85㎡이하 : 청약신청 시 모두 가점제로 접수함.(별도의 가점제 신청자격 제한없음.) 가점제 적용(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 선정).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85㎡초과 : 100% 추첨제 적용 ※ 2015.2.2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유주택자에 대한 중복 감점 적용 없음.	화성시 / 수도권
		85㎡이하	• 가점제 적용(가점제 40%, 추첨제 60%)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신청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하고, 총납입금액이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단, 신청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85㎡초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한 자 중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청약저축 : 청약저축가입자가 해약과 동시에 그 불입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변경(전환)한 자 중 최초 가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하고, 총납입금액이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단, 신청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2순위	전 주택형	•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추첨제	

■ **신청접수방법:**

(1) 공통
1. 층별·동별·호별·향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2.15) 현재 화성시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당해지역 거주자"), 경기도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경기도 거주자"),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들 전원이 청약순위별로 지정된 일정에 따라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2. 청약순위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당해지역(화성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20%를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수도권지역(경기도 6개월 미만거주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동일 순위내에서 당해지역 거주자 접수결과 미달된 세대는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경기도 거주자 접수결과 미달된 세대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수도권 거주자 접수결과 미달 시에는 잔여물량을 각각 상기 거주 지역별 배분비율을 적용 배분하여 차순위에게 공급함.(차순위 공급세대 배분방식 및 공급순서 또한 선순위와 동일함)
3. 당해지역 거주자 자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 중 해당지역 계속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제한됨.
4. 1순위 : 각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 가점제, 60%를 추첨제 신청자에게 공급함.
5.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6. 청약자격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유의사항**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 • 거주개시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재당첨제한 등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여 향후 부적격당첨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오기 등에 의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청약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음.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단, 만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 ※주택 소유에 따른 감점제 폐지(60세 이상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및 청약자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중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 따라 감점항목 없음.(2015.02.2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이상 ~ 13년미만	26	
		4년이상 ~ 5년미만	10	13년이상 ~ 14년미만	28	
		5년이상 ~ 6년미만	12	14년이상 ~ 15년미만	30	
		6년이상 ~ 7년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이상 ~ 8년미만	16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이상 ~ 9년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월이상 ~ 1년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11	
		1년이상 ~ 2년미만	3	10년이상 ~ 11년미만	12	
		2년이상 ~ 3년미만	4	11년이상 ~ 12년미만	13	
		3년이상 ~ 4년미만	5	12년이상 ~ 13년미만	14	
		4년이상 ~ 5년미만	6	13년이상 ~ 14년미만	15	
		5년이상 ~ 6년미만	7	14년이상 ~ 15년미만	16	
		6년이상 ~ 7년미만	8	15년이상	17	
		7년이상 ~ 8년미만	9			
총점	84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외 세대원이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청약1순위로 신청하는 경우 유주택자이므로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으로 산정함.

○ **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구분	신청자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 3천만원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 포함)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이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인 손자녀 포함)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한다.

■ **노약자, 장애우 등 은행창구 청약시 구비사항**

구분	구비사항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서(1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2순위 : 청약통장을 취급하는 은행에 비치) · 청약통장(1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1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 본인확인증표(배우자 대리 신청시는 배우자의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시: 가족관계증명서1통)[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청약신청금(2순위 신청자에 한함)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본인확인증표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단, 주민등록상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 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전 본인의 청약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람.

■ **2순위 청약신청금 :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 혹은 청약자의 거래은행 본·지점 창구 신청접수**

주택형	금 액	신청금 납부 방법
전 주택형	100 만원	* 인터넷 청약시(08:00~17:30) : 인터넷 뱅킹계좌에서 자동 출금(청약신청전 계좌잔액을 2순위 청약신청금 이상 유지) * 영업점 방문 청약시(09:00~16:00) : 청약자 거래은행 본·지점에서 금융기관 발행한 자기앞 수표 또는 현금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 주택청약(인터넷뱅킹) 참가은행 : 기업, 국민, KEB하나,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신한은행

■ **2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 익 영업일(2016.12.29.) 후부터 평일(09:00~16:00, 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환불장소**

구 분	환 불 장 소	비 고
인터넷 신청 시	은행에서 청약자 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환불	–
은행창구 접수 시		환불계좌 미지정시 청약 접수한 거래은행 본·지점 방문

- **환불대상** : 2순위 청약자(당첨자 포함)
- **자동환불 미신청자 창구환불시 구비사항**
- – 본인, 배우자 환불시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 제출), 본인확인증표(※은행창구 청약신청 시와 동일), 신청시 사용인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 제3자 대리환불시 : 상기 구비서류 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 환불 위임용) 1통[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제3자의 본인확인증표(※은행창구 청약신청 시와 동일), 위임장
- 2순위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2순위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거래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3.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비고
특별공급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	2016. 12. 20.(화) (09:00 ~ 15:00)	• 견본주택 방문접수	• 송산신도시 대방 노블랜드 견본주택	
일반공급	1순위	2016. 12. 21.(수) (08:00~17:30)	• 인터넷 신청	• 1순위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www.apt2you.com)	
	2순위	2016. 12. 22.(목) (08:00~17:30)		• 2순위 –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이용자(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인터넷뱅킹 이용자(www.apt2you.com)	

※ 특별공급 공급신청자 과밀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 및 공고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 : 기업, 국민, KEB하나,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신한은행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거래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게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인터넷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노약자, 장애우 등 창구 청약 가능시간 : 해당 청약신청일 09:00~16:00, 단,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하며 2순위 접수는 청약자의 거래은행 본·지점 창구에서 가능)
※ 기관추천 특별공급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철거주택 소유자인 경우 무주택세대주, 청약통장가입 요건 등 일부항목 제외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O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O		주민등록증	본인	또는 운전면허증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O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민 제외)
기관추천 특별공급	O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만 인정함, 복지카드 등 기타서류 불가, 국가유공자는 보훈청 관리명단으로 접수함
다자녀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O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이혼, 재혼 가정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접수 장소에 비치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공급신청자가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직계비속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만 19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O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접수 장소에 비치
		O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해당자	접수 장소에 비치
	O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도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O		소득증빙 서류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표1 소득증빙서류 참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O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O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O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O		주민등록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O		인장	대리인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2.15.)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표1) 신혼부부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 된 월별급여명세표 (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해당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접수장소

※ 기타 소득입증관련 증빙서류는 위의 표를 참조하고, 기타 소득관련 사항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4.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발표	동·호수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	• 일시 : 2016. 12. 20.(17: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게재	• 일시 : 2016. 12. 28. • 확인방법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개별조회) (www.apt2you.com,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 일시 : 2017. 01. 03. ~ 2017. 01. 05. (3일간, 10:00~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일시 : 2016. 12. 28.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 특별공급 동·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당사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계약체결장소에서 수납은행 직원에게 직접 납부하여야 함.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공급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국민은행(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이용기간		2016. 12. 28. ~ 2017. 01. 06.(10일간)	
인 터 넷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 주택별 조회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접속 → APT 인터넷 청약 → 당첨사실 조회 → 주택별 조회
전화(ARS)		국민은행 콜센터 1588-9999 (서비스코드 : 9→1→3)	전자금융 공동망 1369 (서비스코드 : 5#)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공대상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2016. 12. 28. (08:3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경기도
특별공급	• 당사 견본주택에서 당첨자만 선정(당첨자를 추첨으로 선정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일반인의 입회하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공개추첨 함)후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에서 컴퓨터 입주 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동·호 배정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에 따라 당첨자 중 1층의 주택을 희망하는 자(당첨자 또는 그 세대원중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사람이 있는 자)에게 1층의 주택 중 무작위로 동·호수를 우선 배정 후 나머지 세대에 대하여 재선정(1층이라 함은 공급주택 중 최저층을 말함)
모든 면적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1순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1.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청약자 모두 가점제로 청약 입주자선정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2.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동일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화성시 1년 이상 거주한 청약자 중 낙첨자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한 청약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며,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한 청약자 중(화성시 1년 이상 거주자 중 낙첨자 포함)낙첨자는 수도권 청약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미계약 세대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 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8조의 제6항에 따라 당첨자 중 1층의 주택을 희망하는 자(당첨자 또는 그 세대원중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사람이 있는 자)에게 1층의 주택 중 무작위로 동·호수를 우선 배정 후 나머지 세대에 대하여 재선정(1층이라 함은 공급주택 중 최저층을 말함)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별도 공고함.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 입주자 선정은 예비당첨자 선정 추첨 행사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며 이는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선정함.

5. 계약체결

■ **구비사항**

구 분		서류유형		구 비 서 류	비 고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O		•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O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용) 1통	
		O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포함), • 주민등록초본(주소지 변동 내역 모두 포함하여 발급)	
		O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O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O	• 대리계약 시(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위임장, 인감도장(대리인),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특별 공급	기관추천/ 다자녀/노부모		O	• 주민등록초본(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 입증,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시)	
	신혼부부	O		• 혼인관계증명서	
			O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O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O	• 임신증명서류(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중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일반공급			O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 시)	
			O	• 주민등록초본(직계존비속,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 혼인관계증명서 (만 30세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만 19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수도권 거주자로 신청 시)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1부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O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O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O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O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2.15.)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2005. 7. 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추후, 계약 시 계약구비서류 변경 또는 추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 안내 예정

■ **계약조건**
1.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제출한 후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7일이내)에 소명을 할 수 없을 경우 당사에서 판단하여 계약 체결함. 미체출시 계약이 취소됨.
2.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3.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로 청약한 것을 소명할 경우 당사에서 판단하여 금융결재원에 당첨자 제외 요청할 예정이며, 차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함)
4.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5.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6.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7.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8.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일반공급에 한함),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음.(2009.4.1 재당첨 제한 완화조치에 의거)
9.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10.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11. 분양권 전매 요청 시 당해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자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자가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음
12.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함.
13. 계약관리(안내, 고지등)를 위해 계약체결시 2011년 07월 29일부터 새로운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행정안전부 안내참고)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시 도로명주소가 명기된 제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종전 지번 기준 주소를 사용하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4. 화성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민등록 위장 전입자가 본 아파트에 공급신청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주택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15.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고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청약가점항목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16.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함.
17. 발코니확장 계약 체결과 마이너스 옵션을 미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사업주체가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품목제공혜택을 받을 수 있음.
18.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선택하는 마감재 선택사항 및 발코니확장 계약, 플러스옵션 계약, 마이너스옵션 계약은 계약체결 이후 변경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람.
19. 행정구역 및 단지내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입주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20. 사업주체의 공동주택 건축 시 주택에의 진, 출입을 위해 시 또는 구 소유 등의 도로를 점용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또는 잔금납부일 중 빠른날로부터 그에 따른 도로 점용료를 부담하여야 함을 유의 바람.
21.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및 분양계약서 및 계약구비서류를 준용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공사비, 추가선택사항 옵션 납부는 지정된 계좌 이외의 계좌로 납부 시 당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당사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받으며 계약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견본주택에서 현장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 계약금 미납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인한 기타 제반문제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단, 무통장 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본 주택의 분양 중도금은 당사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음(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현금 납부하여야 함)

구분	현장명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화성 송산 대방노블랜드 3차	농협은행	317-0011-5157-61	디비개발 주식회사
		국민은행	547801-04-172184	디비개발(주)
		대구은행	504-10-268863-5	디비개발 주식회사

■ **계약자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예정이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관련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이 경우 사업주체는 중도금 납부를 통보할 의무가 없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대출보증서 발급제한, 금융권의 대출 부적격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함(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음. 다만, "중도금 대출에 대한 보증수수료(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시행사에서 대납하게되는 경우, 그 중도금대출보증 보증수수료는 최초 대출이자 발생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이전까지로 하며,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부터는 계약자가 보증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함(이 경우에도 인지대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중도금대출은행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제기 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이자를 시행사에서 대납할 경우 그 대납기간은 최초 대출이자 발생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이전까지로 하며,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부터는 계약자의 실제입주일과 관계없이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부담함. • 계약자가 입주를 하기 위해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 잔금에 사업주체가 대납한 중도금대출이자 및 중도금대출 보증수수료를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함. 만일,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당사가 대납한 중도금대출이자 및 중도금대출 보증수수료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 따른 연체료를 추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중도금대출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없으며"개인사유로 인해 대출미신청"또는"금융거래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사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 및 보증수수료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추후 시행사 또는 해당 은행의 사정에 따라, 공고에 고지된 중도금대출은행이 변경 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별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입주예정일 : 2019년 08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할 예정임)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인허가청 또는 관련 기관(교육청)에서 입주예정일을 앞당기길 요청할 경우 사전 공지에 의해 앞당길 수 있으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 사전방문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의 2에 의거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구 공사등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의 입주 개시 전 약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자가 이를 배상함.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실입주일 또는 입주증발급일로부터 빠른날"로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함. • 추후 당사가 안내하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할 경우 실입주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날)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부터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에는 실입주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날로부터 관리비가 부과되며, 입주 전 인테리어 공사를 선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일부터 관리비가 부과되고, 인테리어공사시 발생되는 쓰레기, 폐기물 등은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함)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 등을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 대출 상환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확인 서류,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함.

6. 추가 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 원, VAT포함)

주택형	발코니 확장금액	계 약 금	잔 금
		계약시	입주지정일
73.9706A	10,300,000	1,000,000	9,300,000
73.9069B	6,814,000	1,000,000	5,814,000
84.9191A	13,773,000	1,000,000	12,773,000
84.9692B	8,054,000	1,000,000	7,054,000
84.9644C	12,102,000	1,000,000	11,102,000
115.1388A	14,168,000	1,000,000	13,168,000
115.1983B	9,545,000	1,000,000	8,545,000

(2)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구 분	현장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사비	화성 송산 대방노블랜드 3차	국민은행	547801-04-172197	디비개발(주)

(3) 유의사항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 (2010.02.18 개정 시행) • 발코니확장 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기간 동안 발코니확장 옵션 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발코니확장 비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확장 공사비 공급가격은 확장으로 인한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발코니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되어질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통합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입주자에게 통합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계약세대에 한하여 서비스 품목[시스템 에어컨(옵션1), 빌트인콤비냉장고(73A,73B제외)]이 제공됨.**

■ **시스템 에어컨 및 주방가전**

(1) 시스템 에어컨 옵션 공사비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옵션선택	시스템 에어컨 적용실(실내기)	설치 대수	옵션금액 (세대단가)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시)	시스템 에어컨 설치 모델명(제조사 : 삼성)
73 A	옵션1	거실, 주방, 침실1(안방)	3	5,200,000	1,000,000	4,200,000	실외기(AJX050HNBCA1) / 실내기(NJ0601CXB2/거실,NJ0321CXB2/주방,침실1)
	옵션2	거실, 주방, 침실1(안방) / 침실2,3 중 선택1	4	6,800,000	1,000,000	5,800,000	실외기(AJX050HNBCA1) / 실내기(NJ0601CXB2/거실,NJ0321CXB2/주방,침실1, NJ0201CXB2/침실2,3)
	옵션3	거실, 주방, 침실1(안방), 침실2,3	5	8,400,000	1,000,000	7,400,000	실외기(AJX060HNBCA1) / 실내기(NJ0601CXB2/거실,NJ0321CXB2/주방,침실1, NJ0201CXB2/침실2,3)
	옵션4 (침실확장형)	거실, 주방, 침실1(안방), 침실2	4	6,800,000	1,000,000	5,800,000	실외기(AJX050HNBCA1) / 실내기(NJ0601CXB2/거실,NJ0321CXB2/주방,침실1, NJ0401CXB2/침실2)
	옵션5 (거실확장형)	거실, 주방, 침실1(안방), 침실2	4	6,800,000	1,000,000	5,800,000	실외기(AJX050HNBCA1) / 실내기(NJ0601CXB2/거실,NJ0321CXB2/주방,침실1, NJ0201CXB2/침실2)
73 B	옵션1	거실, 주방, 침실1(안방)	3	5,200,000	1,000,000	4,200,000	실외기(AJX050HNBCA1) / 실내기(NJ0601CXB2/거실,NJ0321CXB2/주방,침실1)
	옵션2	거실, 주방, 침실1(안방) / 침실2,3 중 선택1	4	6,800,000	1,000,000	5,800,000	실외기(AJX050HNBCA1) / 실내기(NJ0601CXB2/거실,NJ0321CXB2/주방,침실1, NJ0201CXB2/침실2,3
	옵션3	거실, 주방, 침실1(안방), 침실2,3	5	8,400,000	1,000,000	7,400,000	실외기(AJX060HNBCA1) / 실내기(NJ0601CXB2/거실,NJ0321CXB2/주방,침실1, NJ0201CXB2/침실2,3)
84 A	옵션1	거실, 주방, 침실1(안방)	3	5,200,000	1,000,000	4,200,000	실외기(AJX050HNBCA1) / 실내기(NJ0601CXB2/거실,NJ0321CXB2/주방,침실1)
	옵션2	거실, 주방, 침실1(안방) / 침실 2,3,4,알파룸 중 선택1	4	6,800,000	1,000,000	5,800,000	실외기(AJX050HNBCA1) / 실내기(NJ0601CXB2/거실,NJ0321CXB2/주방,침실1, NJ0201CXB2/침실2,3,4,알파룸)
	옵션3	거실, 주방, 침실1(안방) / 침실 2,3,4,알파룸 중 선택2	5	8,400,000	1,000,000	7,400,000	실외기(AJX060HNBCA1) / 실내기(NJ0601CXB2/거실,NJ0321CXB2/주방,침실1, NJ0201CXB2/침실2,3,4,알파룸)
	옵션4	거실, 주방, 침실1(안방) / 침실 2,3,4,알파룸 중 선택3	6	10,000,000	1,000,000	9,000,000	실외기(AJX050HNBCA1, AJX025HNBCA1) / 실내기(NJ0601CXB2/거실,NJ0321CXB2/주방,침실1,NJ0201CXB2/침실2,3,4,알파룸)
	옵션5	거실, 주방, 침실1(안방), 침실 2,3,4,알파룸	7	11,600,000	1,000,000	10,600,000	실외기(AJX050HNBCA1, AJX030HNBCA1) / 실내기(NJ0601CXB2/거실,NJ0321CXB2/주방,침실1,NJ0201CXB2/침실2,3,4,알파룸)
	옵션6 (침실확장형)	거실, 주방, 침실1(안방) / 침실 2,4,알파룸 중 선택1	4	6,800,000	1,000,000	5,800,000	실외기(AJX060HNBCA1) / 실내기(NJ0601CXB2/거실,NJ0321CXB2/주방,침실1, NJ0401CXB2/침실2,NJ0201CXB2침실4,알파룸)
	옵션7 (침실확장형)	거실, 주방, 침실1(안방) / 침실 2,4,알파룸 중 선택2	5	8,400,000	1,000,000	7,400,000	실외기(AJX050HNBCA1, AJX025HNBCA1) / 실내기(NJ0601CXB2/거실,NJ0321CXB2/주방,침실1,NJ0401CXB2/침실2, NJ0201CXB2침실4,알파룸)
	옵션8 (침실확장형)	거실, 주방, 침실1(안방), 침실 2,4,알파룸	6	10,000,000	1,000,000	9,000,000	실외기(AJX050HNBCA1, AJX030HNBCA1) / 실내기(NJ0601CXB2/거실,NJ0321CXB2/주방,침실1,NJ0401CXB2/침실2, NJ0201CXB2침실4,알파룸)
	옵션9 (거실확장형)	거실, 주방, 침실1(안방), 침실 2,4,알파룸 중 선택1	4	6,800,000	1,000,000	5,800,000	실외기(AJX050HNBCA1) / 실내기(NJ0601CXB2/거실,NJ0321CXB2/주방,침실1, NJ0201CXB2/침실2,4,알파룸)
	옵션10 (거실확장형)	거실, 주방, 침실1(안방) / 침실 2,4,알파룸 중 선택2	5	8,400,000	1,000,000	7,400,000	실외기(AJX060HNBCA1) /실내기(NJ0601CXB2/거실,NJ0321CXB2/주방,침실1, NJ0201CXB2/침실2,4,알파룸)
	옵션11 (거실확장형)	거실, 주방, 침실1(안방), 침실 2,4,알파룸	6	10,000,000	1,000,000	9,000,000	실외기(AJX050HNBCA1, AJX025HNBCA1) / 실내기(NJ0601CXB2/거실,NJ0321CXB2/주방,침실1,NJ0201CXB2/침실2,4,알파룸)
84 B	옵션1	거실, 주방, 침실1(안방)	3	5,200,000	1,000,000	4,200,000	실외기(AJX050HNBCA1) / 실내기(NJ0601CXB2/거실,NJ0321CXB2/주방,침실1
	옵션2	거실, 주방, 침실1(안방) / 침실 2,3 중 선택1	4	6,800,000	1,000,000	5,800,000	실외기(AJX050HNBCA1) / 실내기(NJ0601CXB2/거실,NJ0321CXB2/주방,침실1, NJ0201CXB2/침실2,3
	옵션3	거실, 주방, 침실1(안방), 침실 2,3	5	8,400,000	1,000,000	7,400,000	실외기(AJX060HNBCA1) / 실내기(NJ0601CXB2/거실,NJ0321CXB2/주방,침실1, NJ0201CXB2/침실2,3
84 C	옵션1	거실, 주방, 침실1(안방)	3	5,200,000	1,000,000	4,200,000	실외기(AJX050HNBCA1) / 실내기(NJ0601CXB2/거실,NJ0321CXB2/주방,침실1)
	옵션2	거실, 주방, 침실1(안방) / 침실 2,3,4 중 선택1	4	6,800,000	1,000,000	5,800,000	실외기(AJX050HNBCA) / 실내기(NJ0601CXB2/거실,NJ0321CXB2/주방,침실1, NJ0201CXB2/침실2,3,4
	옵션3	거실, 주방, 침실1(안방) / 침실 2,3,4 중 선택2	5	8,400,000	1,000,000	7,400,000	실외기(AJX060HNBCA) / 실내기(NJ0601CXB2/거실,NJ0321CXB2/주방,침실1, NJ0201CXB2/침실2,3,4)
	옵션4	거실, 주방, 침실1(안방), 침실 2,3,4	6	10,000,000	1,000,000	9,000,000	실외기(AJX050HNBCA, AJX025HNBCA) / 실내기(NJ0601CXB2/거실,NJ0321CXB2/주방,침실1, NJ0201CXB2/침실2,3,4
	옵션5	거실, 주방, 침실1(안방) / 침실 2,4 중 선택1	4	6,800,000	1,000,000	5,800,000	실외기(AJX060HNBCA1) / 실내기(NJ0601CXB2/거실,NJ0321CXB2/주방,침실1, NJ0401CXB2/침실2,NJ0201CXB2침실4)
	옵션6	거실, 주방, 침실1(안방), 침실 2,4	5	8,400,000	1,000,000	7,400,000	실외기(AJX050HNBCA, AJX025HNBCA) / 실내기(NJ0601CXB2/거실,NJ0321CXB2/주방,침실1, NJ0401CXB2/침실2, NJ0201CXB2침실4)
	옵션7 (거실확장형)	거실, 주방, 침실1(안방) / 침실 2,4 중 선택1	4	6,800,000	1,000,000	5,800,000	실외기(AJX050HNBCA1) / 실내기(NJ0601CXB2/거실,NJ0321CXB2/주방,침실1, NJ0201CXB2/침실2,4
	옵션8 (거실확장형)	거실, 주방, 침실1(안방), 침실 2,4	5	8,400,000	1,000,000	7,400,000	실외기(AJX060HNBCA1) / 실내기(NJ0601CXB2/거실,NJ0321CXB2/주방,침실1, NJ0201CXB2/침실2,4
115 A	옵션1	거실, 주방, 침실1(안방)	3	5,200,000	1,000,000	4,200,000	실외기(AJX050HNBCA1) / 실내기(NJ0721CXB2/거실,NJ0321CXB2/주방,침실1)
	옵션2	거실, 주방, 침실1(안방) / 침실2,3,4,5,알파룸 중 선택1	4	6,800,000	1,000,000	5,800,000	실외기(AJX060HNBCA1) / 실내기(NJ0721CXB2/거실,NJ0321CXB2/주방,침실1, 알파룸NJ0201CXB2/침실2,3,4,5)
	옵션3	거실, 주방, 침실1(안방) / 침실2,3,4,5,알파룸 중 선택2	5	8,400,000	1,000,000	7,400,000	실외기(AJX060HNBCA1) / 실내기(NJ0721CXB2/거실,NJ0321CXB2/주방,침실1,알파룸NJ0201CXB2/침실2,3,4,5)
	옵션4	거실, 주방, 침실1(안방) / 침실2,3,4,5,알파룸 중 선택3	6	10,000,000	1,000,000	9,000,000	실외기(AJX050HNBCA1,AJX025HNBCA1) / 실내기(NJ0721CXB2/거실,NJ0321CXB2/주방,침실1,알파룸 NJ0201CXB2/침실2,3,4,5)
	옵션5	거실, 주방, 침실1(안방) / 침실2,3,4,5,알파룸 중 선택4	7	11,600,000	1,000,000	10,600,000	실외기(AJX050HNBCA1,AJX030HNBCA1) / 실내기(NJ0721CXB2/거실,NJ0321CXB2/주방,침실1,알파룸 NJ0201CXB2/침실2,3,4,5)
	옵션6	거실, 주방, 침실1(안방), 침실2,3,4,5,알파룸	8	13,200,000	1,000,000	12,200,000	실외기(AJX050HNBCA1,AJX040HNBCA1) / 실내기(NJ0721CXB2/거실,NJ0321CXB2/주방,침실1,알파룸 NJ0201CXB2/침실2,3,4,5)
	옵션7 (침실확장형)	거실, 주방, 침실1(안방) / 침실2,4,5,알파룸 중 선택1	4	6,800,000	1,000,000	5,800,000	실외기(AJX060HNBCA1) / 실내기(NJ0721CXB2/거실,NJ0321CXB2/주방,침실1,알파룸NJ0401CXB2/침실2, NJ0201CXB2/침실4,5)
	옵션8 (침실확장형)	거실, 주방, 침실1(안방) / 침실2,4,5,알파룸 중 선택2	5	8,400,000	1,000,000	7,400,000	실외기(AJX050HNBCA1, AJX025HNBCA1) / 실내기(NJ0721CXB2/거실,NJ0321CXB2/주방,침실1,알파룸 NJ0401CXB2/침실2, NJ0201CXB2/침실4,5)
	옵션9 (침실확장형)	거실, 주방, 침실1(안방) / 침실2,4,5,알파룸 중 선택3	6	10,000,000	1,000,000	9,000,000	실외기(AJX050HNBCA1, AJX030HNBCA1) / 실내기(NJ0721CXB2/거실,NJ0321CXB2/주방,침실1,알파룸 NJ0401CXB2/침실2, NJ0201CXB2/침실4,5)
	옵션10 (침실확장형)	거실, 주방, 침실1(안방), 침실2,4,5,알파룸	7	11,600,000	1,000,000	10,600,000	실외기(AJX050HNBCA1, AJX040HNBCA1) / 실내기(NJ0721CXB2/거실,NJ0321CXB2/주방,침실1,알파룸 NJ0401CXB2/침실2, NJ0201CXB2/침실4,5)
	옵션11 (거실확장형)	거실, 주방, 침실1(안방) / 침실2,4,5,알파룸 중 선택1	4	6,800,000	1,000,000	5,800,000	실외기(AJX060HNBCA1) / 실내기(NJ0721CXB2/거실,NJ0321CXB2/주방,침실1,알파룸NJ0201CXB2/침실2,4,5)
	옵션12 (거실확장형)	거실, 주방, 침실1(안방) / 침실2,4,5,알파룸 중 선택2	5	8,400,000	1,000,000	7,400,000	실외기(AJX060HNBCA1) / 실내기(NJ0721CXB2/거실,NJ0321CXB2/주방,침실1,알파룸NJ0201CXB2/침실2,4,5)
	옵션13 (거실확장형)	거실, 주방, 침실1(안방) / 침실2,4,5,알파룸 중 선택3	6	10,000,000	1,000,000	9,000,000	실외기(AJX050HNBCA1,AJX025HNBCA1) / 실내기(NJ0721CXB2/거실,NJ0321CXB2/주방,침실1,알파룸) NJ0201CXB2/침실2,4,5)
	옵션14 (거실확장형)	거실, 주방, 침실1(안방), 침실2,4,5,알파룸	7	11,600,000	1,000,000	10,600,000	실외기(AJX050HNBCA1,AJX030HNBCA1) / 실내기(NJ0721CXB2/거실,NJ0321CXB2/주방,침실1,알파룸) NJ0201CXB2/침실2,4,5)
115 B	옵션1	거실, 주방, 침실1(안방)	3	5,200,000	1,000,000	4,200,000	실외기(AJX050HNBCA1) / 실내기(NJ0721CXB2/거실,NJ0321CXB2/주방,침실1)
	옵션2	거실, 주방, 침실1(안방) / 침실2,3,4 중 선택1	4	6,800,000	1,000,000	5,800,000	실외기(AJX060HNBCA1) / 실내기(NJ0721CXB2/거실,NJ0321CXB2/주방,침실1, NJ0201CXB2/침실2,4,NJ0321CXB2/침실3)
	옵션3	거실, 주방, 침실1(안방) / 침실2,3,4 중 선택2	5	8,400,000	1,000,000	7,400,000	실외기(AJX060HNBCA1) / 실내기(NJ0721CXB2/거실,NJ0321CXB2/주방,침실1, NJ0201CXB2/침실2,4,NJ0321CXB2/침실3)
	옵션4	거실, 주방, 침실1(안방), 침실2,3,4	6	10,000,000	1,000,000	9,000,000	실외기(AJX050HNBCA1, AJX025HNBCA1) / 실내기(NJ0721CXB2/거실,NJ0321CXB2/주방,침실1, NJ0201CXB2/침실2,4,NJ0321CXB2/침실3)

(2) 주방가전 옵션 공사비

(단위:원, VAT포함)

구분	타입	품목명	제조사(제품명)	옵션금액	계약금	잔금	비 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주방 가전	73A, 73B	빌트인 양문형냉장고	LG전자(R-L692JYS)	7,100,000	1,000,000	6,100,000	– 빌트인 양문형냉장고 선택 시 빌트인 김치냉장고가 무상시공 됩니다. – 미선택 시 냉장고장, 김치냉장고장이 설치됩니다. (도어 미설치) – 미선택 시 가구가 설치되는 벽체의 상·하부, 후면은 벽체마감재 시공되지 않음.
	84A, 84B, 84C, 115A, 115B	빌트인 양문형냉장고	LG전자(R-L692JYS)	7,100,000	1,000,000	6,100,000	– 빌트인 양문형냉장고 선택 시 김치냉장고장이 설치됩니다.(도어설치) – 미선택 시 냉장고장, 김치냉장고장이 설치됩니다. (도어 미설치) – 미선택 시 가구가 설치되는 벽체의 상·하부, 후면은 벽체마감재 시공되지 않음.
	84A, 84B, 84C, 115A, 115B	빌트인 콤비냉장고	LG전자(R-L267JM)	1,050,000	100,000	950,000	

(3) 추가선택품목 공사비 납부계좌

(단위:원, VAT포함)

구 분	현장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선택품목 공사비	화성 송산 대방노블랜드 3차	국민은행	804601-04-216556	디비개발(주)

(4) 유의사항
- 추가선택사항 옵션 공급가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지자체로부터 계약자에게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추가선택사항 옵션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이며, 계약 후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함. • 추가선택 품목 중 발코니 확장계약세대에 한하여 각 주택형별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 1 공사비 및 빌트인 콤비냉장고 옵션 공사비(73A, 73B제외)는 무상으로 제공됨.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사항 옵션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옵션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추가선택사항 옵션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선택할 수 없으며, 추가선택사항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추가선택사항 옵션의 설치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음. • 추가선택사항 옵션은 발코니확장 선택 시 설치가능하며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 • 추가선택사항 옵션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동가 수준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상기 추가선택사항 옵션품목의 계약조건(계약금, 잔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추가선택사항 옵션 선택 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음.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 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은 편의상 냉난방용으로 설치하였으며, 본 공사 시 적용될 시스템에어컨은 난방기능이 없음 • 각 주택형별로 시스템에어컨 옵션 1이 무상 제공됨에 따라 옵션 1을 제외한 기타 옵션을 선택할 경우 해당 옵션의 공급금액은 계약자가 선택한 옵션에서 무상제공되는 옵션 1 선택사항 공급금액의 차액이 되며, 해당금액으로 별도 계약서 작성함.[예시 84A 옵션 2 선택시 실 공급금액(1,600,000원) = 옵션2 금액(6,800,000) – 옵션1 금액(5,200,000)]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1) 공통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 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2)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공급 품목
바닥재	〈합판마루(걸레받이 포함)〉거실,식당,복도,침실 〈타일, 디딤판〉현관 〈타일〉주방, 주방 발코니, 실외기실	각실 바닥 콘크리트노출 마감 각실 바닥 난방(거실, 주방, 복도, 침실), 발코니바닥 방수, 발코니바닥 배수슬리브
벽,천정	벽지 및 천장지, 벽 및 천장 도장 (주방 발코니, 실외기실) 거실 아트월(타일), 주방벽타일, 몰딩, 우물천정 인테리어 마감, 복도 판넬	벽 : 단열+석고보드 또는 미장 또는 콘크리트면 처리 천장(천장틀,석고보드), 커텐박스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기구 일체	배관,배선(콘센트, 스위치)
욕실	타일(바닥,벽), 천정재, 석재(천연석 선반 등), 재료분리대, 욕조하부틀, 코킹, 욕실환풍기, 스위치, 콘센트 욕실장,샤워부스,욕실폰,욕조,양변기,세면기,수전류,액세서리류	방수(바닥,벽체),설비배관(급수,급탕 등 매립배관),욕실 배기덕트,바닥배수 슬리브,전기,통신배관 배선
주방가구	주방가구 : 상,하부장(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주방TV, 벽타일, 주방수전, 아일랜드 주방 싱크볼, 음식물탈수기, 4구쿡탑, 렌지후드, 전기오븐, 코너선반, 냉장고장, 주방키큰장	설비배관, 렌지후드(자동식 소화기 설치관련) 전기,통신 배관/배선(주방TV폰 등 의 전기입선), 주방 배기덕트
가구 및 기타사항	신발장, 세탁실 및 발코니수전, 주방냉장고장, 펜트리장, 화장대, 드레스룸, 세면대장, 인테리어판넬(가구판넬)	월패드, 각실 온도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거실, 안방)
창호	창호(각 침실 및 욕실 문틀, 목문짝, 목문손잡이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목창호 가틀,문틀사춤,플라스틱 창호내창,현관 방화문, 디지털도어락, 주방 발코니 목창호, 실외기실 도어

(3) 마이너스 옵션금액

(단위:원, VAT포함)

주택형	마이너스 옵션						
	73.9706A	73.9069B	84.9191A	84.9692B	84.9644C	115.1388A	115.1983B
기본선택 (마이너스 옵션금액)	21,615,000	21,579,000	25,133,000	25,071,000	25,044,000	31,926,000	31,873,000

(4) 마이너스 옵션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 단, 마이너스 옵션의 선택과 불선택 중 택일 할 수 있을 뿐이며,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상기 마이너스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세대별 일괄로 선택해야 함. • 빌트인 가전, 빌트인 가구, 시스템에어컨, 각종 시스템은 해당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과는 관련없음.(단, 공동주택 마이너스옵션선택 시 선택품목은 제공하지 않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불가함) • 상기 마이너스옵션 금액은 자재수급 사정·품질관리·시공관리·공사일정등 기타 사업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분양계약 이후에는 마이너스옵션을 추가 신청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옵션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 의 산정 등에 관한 산정지침」 제3조 규정의거 입주지정개시일부터 60일 이내까지 법 규정을 준수하여 완료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게 함.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공사 착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시 기 시공된 소방, 통신,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등 기타 기 시공시설물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품목의 시공에 따라 발생하는 하자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인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 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됨.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닥재의 경우 내부 분합문(PVC내부창호)이 당초 계획된 자재인 마루판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타자재(대리석등)의 시공이 어려울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입주자가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서 입주 후 소음,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인 책임은 사업 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함.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 됨.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 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분양가는 공급금액 총액에서 마이너스옵션 산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임.

7. 기타

▣ 유의사항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3)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 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기준임.
(4)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5)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6)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①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②전용면적 85m2 이하의 단독주택
  - ③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 3천만원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함.
- – (현재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 – (현재 : 무주택자)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단, 2007. 8.31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특별공급 제외)시 적용함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① 사업주체는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②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④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제27조,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21조의2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 (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경과기간 및 요건 등)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02.27.)에 따라 청약관련 예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최초 청약 전까지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선택하여 정하여야 함.
  -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 ①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②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주택형과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람.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람.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함. • 순위 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오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공부상 주소체계에도 아파트 브랜드명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음.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계약시 체결된 건물의 공급면적 및 대지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2% 이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그로 인한 입주지연보상금 등은 발생하지 않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V.R, 홍보물(카탈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오탈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 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확인하시어 계약시 착오없으시길 바람. • 본 카다로그, 홍보물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이미지컷 및 전시모형은 전 세대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음.
- 본 카다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과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 연출한 것으로 식재 및 색상, 시설물 등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질 또는 동급의 성능 이상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 또는 분양완료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그로 인한 입주지연보상금 등은 발생하지 않음) • "을"은 계약체결 전 당해 사업장의 공용부 시스템에 대하여 확인하고, 추후의 민원이나 시설 추가 요구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창호(프레임, 유리등)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임의로 지정된 제조사에 의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공사 시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 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견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기본형세대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환기 장치, 환기 디퓨저, 온도조절기, 콘센트 및 바닥배수구, 욕실환풍기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내 배수구 등의 설비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될 예정임.
- 일부 세대 선택형 평면타입을 적용할 경우 전기 배선기구 및 위치가 달라질 수 있음. • 아파트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로 시행사(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비확장 선택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단,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 계약 불가함) • 발코니 확장 선택시 확장부위는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확장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별도의 수전 및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주택법시행령」등 관계법규에 따라 이루어짐. • 견개별인테리어 공사 등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계약자가 중도금대출 상환 또는 중도금대출 대환처리 및 잔금 완납 후 가능함.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관련법령 내 적합한 세대 내·외부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음.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추후 설계변경된 부분을 하자로 주장할 수 없음. • 최상층 다락의 계단의 위치, 단높이, 단넓이, 단폭은 다소 이동 및 변경이 가능하며, 다락 일부 공간은 폐쇄형 구조로 되어 있어 사용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명칭,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경관/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색상, 디자인, 재질,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 등,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부대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함.
- 당 단지는 건축법, 주택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 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 입면의 돌출발코니, 입면 장식,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시행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에는 자전거 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장,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채광,환기,방습 따위를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시설물의 위치는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22.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외관디자인(입면 마감재료 및 색채, 측벽디자인, 옥탑장식물, 몰딩, 창틀 모양 및 색상 등), 동현관, 캐노피, 지하출입구, 난간 디테일, 문주, 천창, DA, 쓰레기분리수거장, 조경패턴 등 외부 시설물 등은 관계기관의 협의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입주민과 근린생활시설 이용자간 주차장이 별도 계획된 단지로, 근린생활시설 방문자는 별도 구획된 지상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음. • 당사가 안내하는 세대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및 입주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에 의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이용시 주동주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차량이 주차될 수 있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준공 전·후, 단지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 및 타 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동조합으로 인한 요철 및 입면디자인으로 인한 장식으로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일부 침해될 수 있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화성 송산그린시티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마감재의 사양은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인지하신 후 분양신청 하시기 바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각종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서 및 관련도면에 첨부된 자재 및 공법은 실 시공시 현장 여건 및 자재수급 여부에 따라 동급이상 또는 동급 이상 자재 및 공법으로 대체될 수 있음.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주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중 입주시까지 거주지, 연락처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내용(주민등록등본 포함)을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로 필히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제출로 인하여 안내문 등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됨.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일부 동의 엘리베이터 홀은 직접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계약자는 본 주택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집약관리를 위해 동법에서 지정하는 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화재 기타 이와 유사한 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제반피해는 계약자가 부담함.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사업승인시 해당관청에 제출한 총사업비 규모는 사업을 진행하기전 사업주체가 예상하는 총사업비 규모를 예상하는 금액이며,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금액은 당사가 사업승인권자로부터 "분양가 심의"를 받은후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므로 당초 사업비 규모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사업지는 입주 시 주변 도로 인접과 교통량 증가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주변 세대들은 소음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 청약 및 계약에 임하여 주시기 바람.
- 대지면적과 용적율, 건폐율은 아래와 같음.

구분	전체면적	공동주택면적	기부채납면적	상가면적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	63,449.00	62,718.8370	–	730.1630	11.53%	155.96%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입주자 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 구비서류 등에 의함.

8. 단지 여건사항

■ **지구여건 및 단지외부여건**
- 사업승인도서, 카탈로그, 단지모형 상의 외부도로, 진입도로는 사업승인시의 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따라 반영되었고, 추후 교통영향평가 변경이 있을 경우 단지 내,외부도로, 진입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형태는 상이해질 수 있음. • 화성 송산그린시티 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학교 등)은 국가기관, 지자체 및 택지개발시행자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 • 송산그린시티는 개발계획, 실시계획 및 제영향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변경시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변경되는 송산그린시티 조성계획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화성 송산그린시티는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본 지구는 선 시행된 사업지구이며 조성공사 및 건축 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입주후에 시행될 예정으로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화성 송산그린시티 사업지구내로 이전 계획이 있는 행정기관 등의 위치 및 이전시기 등은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화성 송산그린시티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 조정될 수 있음.
- 단지 외부의 완충녹지, 연결녹지, 하천 및 연결통로 등은 당사의 시공범위가 아니며, 화성 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지구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 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배치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으로 유입되는 고등학생은 기존학교 및 지구 내 설립예정인 학교에 배치 가능함. •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의 모형도상의 단지 인근 초등학교 계획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가상으로 제작된 것으로 학교의 형태 및 위치, 크기 등은 추후 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인근 학교 개교시기는 해당 관청의 예산사정,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학교 배치시 인접한 학교에 배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교육청에 확인이 필요함.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음.
- 주변 공원계획은 K-water 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에 의해 향후 변경 가능하며, 견본주택 및 기타 분양 홍보물에 표현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송산그린시티 사업지구 내 열·전기·가스공급시설, 하수처리시설, 오수중계펌프장, 주유소, 산업단지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설치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만일 위 시설들로 인한 악취, 소음 등 발생 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부여건**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의 종류 및 기능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 경관조명, 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아파트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쓰레기집적소 및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비상 및 소방차량이 정차가능한 공간이 형성되어 있음. • 본 아파트는 탑상형 및 판상형구조가 혼합된 단지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입면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거동 옥상은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 및 건축(경관)심의 권고에 따라 본 공사시 그 형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모든 동 들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주차대수는 대지형태, 주동배치에 따라 동별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주차대수는 전체세대에 대한 지하에 배치된 주차대수의 평균대수 이므로 각동과 인접된 주차장이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 휀이 노출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면, 측면에 설치되어 있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간섭이 있을 수 있음.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출입램프포함)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주출입구에는 지하주차장 출입 및 지상차량 출입램프가 설치되며, 또한 주차차단기의 위치는 현장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지상 및 지하주차장은 일반주차, 장애인용주차, 확장형주차, 경차주차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용도별주차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고층 또는 일부세대의 경우 입주 시 이삿짐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므로 청약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을 하여야 함. • 옥상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출입이 금지되고, 출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최상층 세대의 다락과 테라스 공간으로 인해 아파트 옥상공간의 일부는 사용상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최상층 세대의 다락 및 테라스는 해당 입주자가 전속적으로 사용하고 다른 구분 소유들은 이에 동의하며, 최상층 세대의 입주자는 해당 다락 및 테라스에 대하여 소유면적을 등기부상 등재할 수 없음. • 최상층 세대의 다락 테라스 사용으로 인하여 인접세대에 생활소음 및 사생활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 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음. • 단지 내·외 조경 및 토목공사는 향후 근린공원, 보행통로, 가로수, 도로, 시설물, 포장 등의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남서측 및 남동측, 북서측이 도로에 접해있으며, 도로변에 별도의 방음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도로에 인접한 일부동에는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단지 주 출입구에 위치한 저층부 세대는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는 차량에 의해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가 될 수 있음. • 저층부세대는 단지 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보행자에 의해 생활소음 및 사생활권 등의 침해가 될 수 있음.
- 단지 내부에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공공보행로 및 안전통학로가 설치되며, 이를 이용하는 보행자로 인해 단지내 생활소음 및 사생활권 등의 침해가 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이 인접한 동은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의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한 동은 이용하는 이용객에 의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가건축물에 의해 조망권 및 프라이버시, 사생활권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충분히 이를 숙지하고 확인하여 계약을 하여야 함. • 쓰레기집적소는 추후 조경특화계획에 따라 이동 변경가능 함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조경특화 계획에 따라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공급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음.
- 단지 경계 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램프나 계단 등이 설치 될 수도 있음.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 일체의 운영 및 유지관리는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운영하여야 함. • 작은도서관 및 독서실의 도서 및 가구류, 실내운동시설의 운동장비 등은 제공되며, 기타 주민공동시설의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음.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의 이동식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음. • 주민운동공간 및 단지출입구, 지하주차장출입구, 경비실, 관리사무소,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산책로 등 주민 공동시설이 위치하는 곳의 저층 일부세대에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에 의한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각 동 1층 세대의 발코니 전면부는 프라이버시 보호 및 방범을 위한 세대정원이 조성될 수 있으며, 정원 조성 시 1층 세대 입주자는 해당정원에 대하여 소유면적을 등재할 수 없으며, 세대전용정원의 바닥재포장 등 용도변경 및 조경수의 추가식재,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없음. • 각 동 1층 세대의 정원은 공용면적으로 1층 세대 입주자의 사유면적이 아님. • 최상층 다락의 계단의 위치, 단높이, 단넓이, 단폭으로 인하여 사용상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다락 일부 공간은 폐쇄형 구조로 되어 있어 사용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최상층 세대의 입주자는 해당 다락에 대하여 소유면적으로 등기부상 등재할 수는 없음.
- 각 동 출입구에서 쓰레기 집적소까지의 거리는 동별로 상이함. • 주민공동시설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및 진동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으며,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비위치는 변동될 수 있음. • 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에 따라 연결녹지 및 하천 연결통로가 단지 보행자 출입구에서 멀리 위치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사업부지 소음측정 및 예측결과에 따라 방음시설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도로에 근접한 일부동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도로변에 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방지를 위한 수림대 및 방음림설치에 따라 조망 및 일조가 제한 될 수 있음. • 단지 도로변에 방음벽이 설치될 경우 인접동 저층 일부세대는 조망 및 일조가 제한 될 수 있으며, 방음벽의 설치위치 및 사양, 형태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9. 설계관련 주요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세대/디자인
1. 분양시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견본주택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품들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주체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본 공사시 동질 또는 동급의 제품으로 시공됨. 3.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각 면적별 분양되는 단위세대의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5. 선홈통은 발코니 또는 PD내에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6. 가변형벽체는 이동식이 아닌 건식고정 벽체임. 7. 전기(스위치, 콘센트, 월패드 등) 설비마감재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8. 홍보물에 표현된 옥상 구조물의 크기, 위치, 모양 등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9. 층별, 라인별로 외부마감재료 및 외부창호 디테일이 상이 할 수 있음. 10. 본 공사시 석재 등 천연소재 자재의 경우 천연재료의 특성상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음. 11.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음. 12.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①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② 고정형 가구 상하부, 측면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③ 주방가구와 접하는 상하부,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13.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을 기본으로 하며, 수전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에도 배수설비가 설치될 수 있음(이는 시공상 하자가 아니므로 하자를 주장할 수 없음) 14.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15. 본공사시 신발장내부에 세대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이 설치 됨. 16. 본공사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7.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음. 18.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19.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람. 20.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의 간격이 조정될 수 있음. 21. 각 세대 안방도어에는 프라이버시 타입의 도어락이 설치되며, 도어 하부는 오토실이 설치되지 않음. 본공사시 신발장 및 붙박이장 배면은 도배지가 시공되지 않음. 22. 세대입구는 전시용 프레임이 설치되었으며 본공사시 문틀 및 현관바닥이 달라질 수 있음. 23. 블록별로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구축되므로 단지간의 화상통화는 가능하지 않을 수 있음. 24. 관리 및 방재시스템(엘리베이터, 소방, 원격검침, 홈네트워크등)은 통합되지 않고 블록별로 각각 설치될 예정이며 향후 통합 관리가 불가 함. 25. 세대 내부실 시공 시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5] 26.건축허용오차(제20조관련)내의 시공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견본주택과 다소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이는 시공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26. 발코니 미확장세대의 윗층세대가 발코니확장세대인 경우 상부 확장 발코니의 단열을 위하여 하부층 미확장세대의 발코니 천장에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확장세대의 입주자는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발코니확장을 제외하고는 천정에 설치되는 단열재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27. 발코니 확장세대 발코니 확장세대의 인접세대(상하좌우)가 비확장세대일 경우 비확장부분과 접한 확장세대 내의 부분의 단열재 추가 설치로 인하여 확장세대는 벽체 돌출이나 우물천정 깊이 감소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28. 발코니 확장 시 세대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고 결로현상은 입주자의 관리상의 문제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시공 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결로 및 이로 인한 곰팡이 등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9. 실외기 실 갤러리(루버) 창 프레임 및 갤러리 등은 금속성 또는 PVC계 재질로서 외기에 직접 면하므로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하자가 아니며 입주자가 관리하여야 할 사항임. 30. 실외기는 발코니 내 실외기실, 현관 옆 실외기실에 설치되며 단위세대 타입별로 실외기 실 위치 및 크기가 상이하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31. 실내환기용 전열교환장기가 단위세대 타입별 실외기실 상부, 발코니 상부 또는 PD내 천장면에 설치되며 천장마감 없이 노출된 형태로 설치될 수 있고 소음이 야기 될 수 있음. 32. 아파트 공용홀 fix창 일부는 화재시 개폐가 가능한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됨. 33. 계약자는 입주 후 세대 내 플리싱타일 표면의 물기를 즉시 제거해야 하며, 물기로 인하여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함. 34. 공용부위의 타일 표면에 물기 발생시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함
35. 입주 후 세대 내 환기가 부족할 경우 내/외부의 온도차이 및 습기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결로에 의한 곰팡이 발생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야 하며 특히 입주 후 첫해 겨울은 환기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특히 욕실 샤워기 및 다량의 온수 사용 시 욕실 환기를 해야 하며, 욕실 환기 미비, 거실, 주방 등에 과도한 가습기 사용이나 음식물 조리 및 다량의 화분(실내 또는 발코니)은 결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시기 바라며 환기에 유의하시기 바람. 36. 단열공사 외 환기불량,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로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음. 37. 계약자는 세대 각 실 및 발코니 외부 창호에 설치된 난간대에 무리하게 힘을 가하거나 전입, 전출, 이사 시 이삿짐 장비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하고, 가급적 이삿짐 등은 해당동 엘리베이터를사용하기 바라며(추후 파손시 원상복구), 불가피하게 난간대 설치구간을 사용할 경우에는 필히 난간대에 보강조치를 하여야 함. 38. 발코니 새시는 층수, 향에 의한 바람의 영향차이로 인해 유리의 강도 및 두께가 달라질 수 있으며, 바람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견본주택에 제시된 형태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39. 단위세대에 시공되는 자연석재(화강석, 대리석 등)는 재료의 특성상 무늬가 일정치 않으며, 일부 표면이 보수된 자재를 사용할 수 있음, 특히, 욕실 내부에 사용되는 석재는 비눗물(세제류 포함) 등에 취약하여 백화 등의 화학적 현상이 발생되므로, 입주자가 사용 후 즉시 청소를 하여 관리하여야 함, 입주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40. 견본주택에 시공된 마감재는 자재특성상 본 시공 시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 41.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와 위치, 개폐방식 등은 시공여건 및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2. 견본주택은 기준층 세대로 꾸며져 있으며 층별, 라인별로 천장고 및 출입구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해당 평면도를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43. 각 평형 최상층 세대는 다락으로 인하여 계단 규격(폭, 높이, 길이) 및 디자인이 변경 됨. 44. 최상층 세대에 설치되는 다락의 일부공간은 지붕의 형태 및 구조상의 이유로 사용상의 제약이 있을수 있음. 45. 외부 입면계획에 의해 장식물 등이 세대 외벽 및 전면 발코니에 설치될 수 있음. 46. 공사 진행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고, 추후 본 주택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의 판단 기준은 사용검사도면에 의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7. 창호 및 문의 열림 방향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48. 환기시스템(장비) 설치에 따른 배관노출, 건축 입면 및 내부마감(창호, 외부그릴, 전등 사이즈 및 위치), 천장카세트형 시스템에어컨은 가구 및 등간섭에 따라 설치 위치가 다소 이동 될 수 있음. 49. 환기시스템의 미가동시에는 환기유닛 및 배관에 결로발생 될수 있으므로 환기시스템을 주기적으로 가동하시기 바랍니다. (미가동으로 인한 결로에 대해서는 당사의 책임이 없음) 50.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51. 지하주차장에서 각동으로 출입 시 지하연결통로로 연결되어 있음. 52. 기본형 세대(비확장형세대)의 경우 조명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다를 수 있음. 53. 기본형 세대(비확장형 세대)의 내부와 발코니 사이에는 PVC 이중창이 기본으로 설치됨
54. 기본형 선택 시 주방 발코니 천장에는 주방 배관 등을 가리기 위한 천장마감이 추가될 수 있음. 55. 발코니 확장세대일 경우 인접세대 또는 상·하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다소 단차가 발생할 수 있음. 56.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새시는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사양이 실시공시 인허가 협의완료 후 변경될 수 있음. 57. 확장되지 아니하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58.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사용되는 자재에 따라 그 두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9. 외부 시스템 창호에는 구조상 국가별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음. 60. 견본주택 내에 시공된 단위세대 조명기구 공사 중 본 공사 시 조도개선 및 자재생산업체 부도, 생산중단 시 동등(자재단가)이상의 제품으로 변경함. 61.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있음. 62. 본 공사 시공 시 자재특성, 품질, 미관향상, 마감시공 방식 차이에 따라 견본주택 시공방식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63. 각 세대별 부부욕실은 거실과의 바닥 단차가 미미하여 욕실내 신발등이 출입문과 간섭됨으로 사용상에 다소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64. 세대 내 일부 발코니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화재시 아래층으로 피난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있으며(단, 1층세대 제외), 이곳에 피난에 방해되는 지장물을 적치할 수 없고, 바닥 타일 디자인 및 제품에 따라 견본주택에 표시된 위치 및 크기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65. 하향식 피난구는 피난의 용이성을 위해 층별로 위치가 좌우로 교차되어 설치되며, 발코니 바닥 및 천정에 제품 마감면이 노출될 수 있으며, 상, 하부세대로부터의 피난구 상부 덮개로 인한 소음 및 방범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아래층 피난구를 임의로 막을 수 없으므로 계약 전 위치 및 관련사항을 확인바람.

■ 세대/규격

[illegible]

■ 제공/전시품목

[illegible]

■ 환경권

[illegible]

■ 외부환경디자인

[illegible]

■ 커뮤니티 시설

[illegible] 경우에는, 사용승인 이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거나 또는 관리사무소가 선정되고나서, 동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에 서비스지원품목 일체가 인수인계되며 이에 대한 관리 및 유지, 보수책임은 인수자(동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에게 있으며, 이 "분양관련 서비스지원품목"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별도의 하자보수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음. 8.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만을 제공하며, 지하공간의 특성상 전자기기, 목재류 등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습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설치에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표시)**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의무사항 적용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고효율기자재	적용	펌프, 전동기 등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사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거실, 주방, 각 침실에 1개소 이상 설치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세대 내 일괄소등스위치 설치
고효율조명기구	적용	세대 및 공용부위에 고효율조명기구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공용화장실 내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거실 및 각 침실에 온도조절장치 설치
절수설비	적용	수도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설비 설치

■ **공동주택 항목별 성능등급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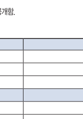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서**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원, VAT포함)

구 분	건축 감리	전기 감리	소방 감리	정보통신 감리
회사명	㈜유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서광이에스	㈜유진씨엔이	㈜유진씨엔이
감리금액	2,091,548,800	592,872,000	115,005,000	22,022,000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본 주택은 「주택법」 제38조의 2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함.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 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구 분	건축 감리	금 액 (원)	비 고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63,973,213,740	
	기간이자	4,580,397,456	
	그 밖의 비용	15,191,010,214	
계 [1]		83,744,621,410	
공사비	토목	7,233,370,009	
	건축	50,523,674,438	
	기계설비	8,328,214,031	
	그 밖의 공종	9,292,362,507	
	그 밖의 공사비	6,427,921,742	
계 [2]		81,805,542,727	
간접비	설계비	940,233,000	
	감리비	2,821,447,800	
	부대비	97,833,175,790	
계 [3]		101,594,856,590	
그 밖의 비용 [4]		27,892,679,273	
합계 [1+2+3+4]		295,037,700,000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가심사결과 (택지비가산비: 19,771,407,670원 / 건축비가산비용: 27,892,679,273원)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12016-101-0010000호	₩206,526,39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중 보증사고의 정의, 보증채무의 내용 및 보증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제1조 (보증사고의 정의) :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 가.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 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라.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제2조 (보증채무의 성립): 보증회사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보증서발급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얻은 때(상가의 경우에는 신고한 때를 말한다)에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 제3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 제4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 입주금등의 납부)
  -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기타 마감재공사). 과 관련한 금액(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당사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 분양자(매도인)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 상세내용은 보증회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 바랍니다.(080-800-9001)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구 분	사업주체	시 공 사
상 호	디 비 개 발 주 식 회 사	대 방 건 설 ㈜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05, 비동 314호(백석동, 현대밀라트 2차)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94-1번지 IB프라자 5층
등 록 번 호	285011-0296546	110111-0757158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24-3**

▣ **분양문의 : ☎ 1688-9700**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